

# 예산총칙

제1조 :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628,287,091	18,848,613
1. 일반회계	621,278,463	18,638,354
2. 특별회계	7,008,628	210,259
의료급여기금	981,528	29,446
주차장	5,532,955	165,989
주거환경개선사업	58,658	1,76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328,400	9,852
지하수관리	107,087	3,213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 
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 
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